

동두천복합화력발전소건설사업등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발의안

(대표발의 : 임상오 의원)

의안 번호	6-190
----------	-------

발의연월일 : 2012. 5. 25

발 의 자 : 임상오, 박현희, 김장중,
홍석우, 박형덕, 심화섭,
장영미 의원 7명

□ 주문

- 가. 「지방자치법」 제56조(위원회의 설치) 규정과 「동두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특별위원회 설치)의 규정에 따라 동두천시에서 민자로 추진중에 있는 사업인 동두천 복합화력발전소 건설, 북동두천 전원개발, 동두천 그린관광 테마파크 조성, 왕방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추진의 적정성과 부진 등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동두천시의회 차원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개선대책을 마련코자 “동두천복합화력발전소건설사업등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 나. 활동기간 : 위원 선임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다. 위원수 : 7명 이내로 한다.
- 라.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이유

- 최근 동두천시에서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LNG복합화력 발전소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반대투쟁위원회의 건설사업 반대시위 등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있어 이들의 의견 청취와 주장의 근거를 확인하고 북동두천 지역 전원개발 사업 제안 등에 대한 주민 동향 파악과 기설치된 지역의 현지 방문 조사 등을 통하여 사업 추진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토 하고자 한다.
또한 동두천 그린관광 테마파크 조성, 왕방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시유지 매각대금 미납사항, 사업 추진의 문제점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조사특별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올바른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동두천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등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 세부활동 계획

- 특별위원회에서 세부계획을 수립·의결로 채택 시행한다.

□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 제56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특별위원회의 설치) ① 특별위원회는 여러 개의 상임 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활동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 동두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특별위원회의 설치) ① 특별위원회는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